

최근의 금융개혁 과제

김우찬 (2021.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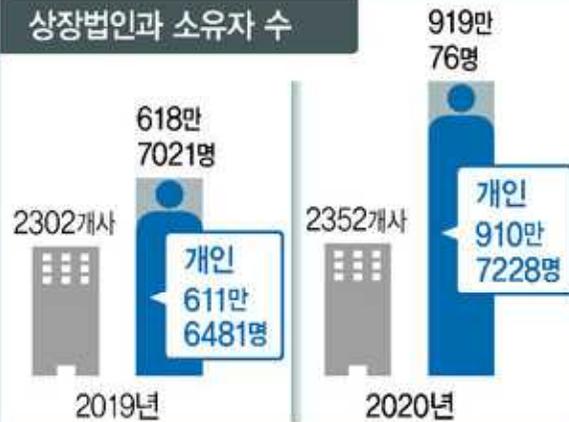
자본시장 포폴리즘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상장법인 주식 소유자 현황 ※2020년 12월 결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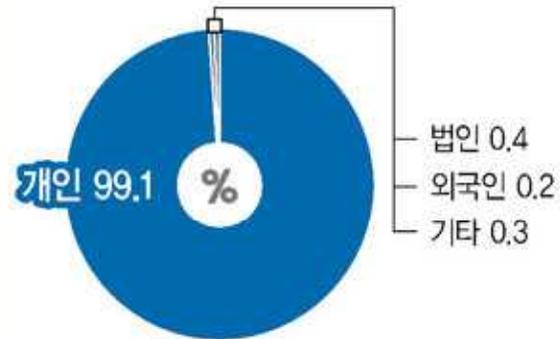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상장법인과 소유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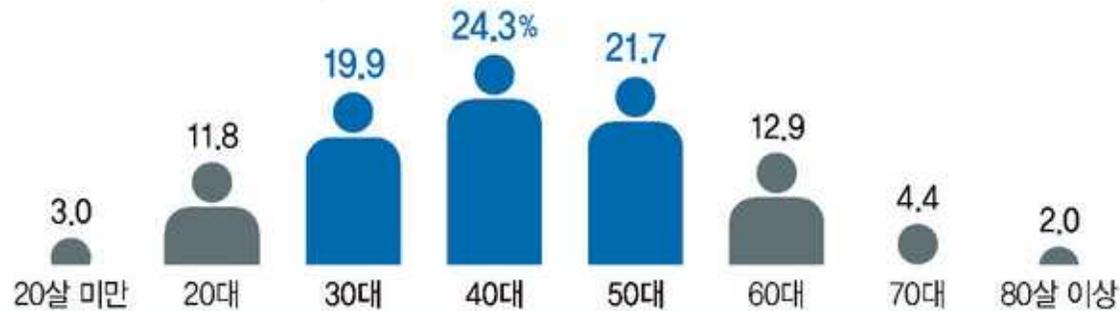
소유자 형태별 분포

※기타는 실명 확인 불가



개인 소유자 연령별 분포

※총 910만7228명 (단위: %)



개인 투자자 = 유권자

- 선거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자본시장 정책을 왜곡

주요 왜곡 사례

연월	주요 사례
2020.08	<u>금융위원회</u> , 공매도 금지 기간 1차 연장
2020.11	<u>기획재정부</u> ,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10억 유지 (당초 3억 원)
2021.02	<u>금융위원회</u> , 공매도 금지 기간 2차 연장
2021.04	<u>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u> , 국내주식 비중 이탈 허용범위 확대

압력 차단 방법? 거품 붕괴 후 자연근절?

금융지주회사 회장을 위한 참호구축



연월	주요 일지
2019.12.05	금융감독원 DLF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결정
2020.12.30	우리금융, 임원추천위원회 손태승 회장후보 단독 추천
2020.01.30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 손태승 회장 중징계(문책경고)
2020.02.06	우리금융 이사회, 손태승 회장후보 결정
2020.03.04	금융위원회, 손태승 회장 중징계(문책경고), 과태료(197억원) 확정
2020.03.04	행정소송 제기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2020.03.16	우리사주조합 (6.42%) 찬성의사 표명
2020.03.19	국민연금 (7.71%) 반대 결정
2020.03.25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 연임 성공 (예보, 과점 주주 찬성)
2020.06.30	금융감독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결정
2021.02.24	금융감독원 라임 국내펀드 분쟁조정위원회 배상비율 결정
2021.04.09	금융감독원(제재심의위원회), 손태승 회장 중징계 (문책경고)

참호구축 (48.25%) = 예보 (17.25%) + 과점주주 (24.58%) + 우리사주조합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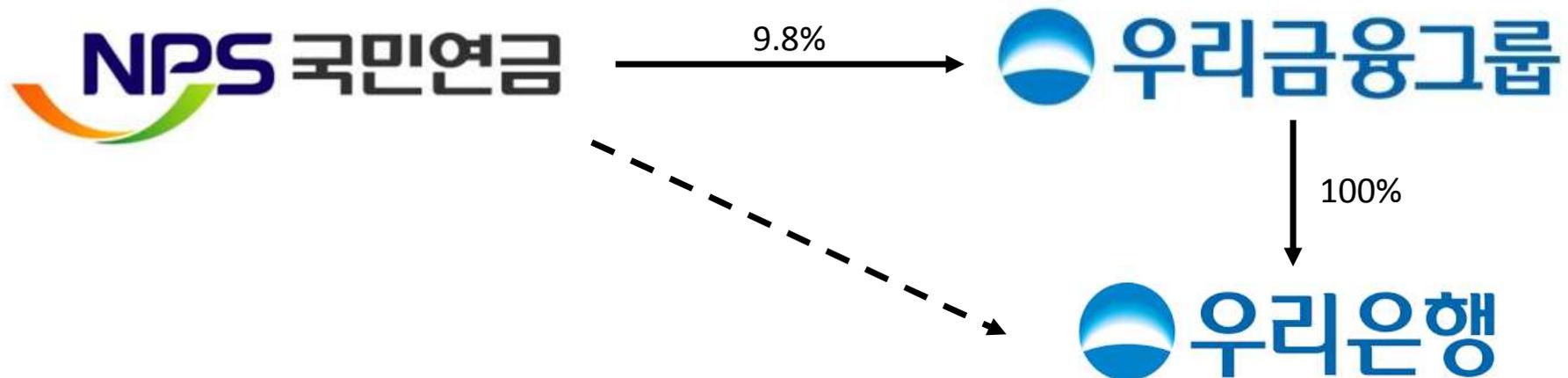
- 과점주주: IMM프라이빗에쿼티 (5.62%), 푸본생명 (4.00%), 동양생명 (3.74%), 키움증권 (3.74%), 한국투자증권 (3.74%), 한화생명 (3.74%)

과점주주와 예보 추천 이사: 사외이사 5-6명 전원과 비상임이사 1명

금융감독원 제재, 주총을 통한 불신임도 무력

- 금융당국 제재: 행정소송,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무력화
- 주총을 통한 불신임: 예보(사실상 금융위), 과점주주, 노조의 지원으로 무력화

대안: 다중대표소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융회사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② 법 제5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 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또는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직무정지 요구일을 말한다) 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다. 문책경고: 문책경고일부터 3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자본적정성 비율 변화

2018.6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text{자본 비율} = \frac{\text{적격자본 (자본합계 - 중복자본^① 차감)}}{\text{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 + 집중위험^② + 전이위험^③ 가산)} } \geq 100\%$$

2020.2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text{자본적정성 비율} = \frac{\text{적격자본 (자본합계 - 중복자본 차감)}}{\text{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 + 그룹위험 가산)} } \geq 100\%$$

2021.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

$$\text{자본적정성 비율} = \frac{\text{통합자기자본* (자기자본합계액 - 중복자본)}}{\text{통합필요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 + 위험가산자본)} } \geq 100\%$$

집중위험에 대한 필요자본 가산

(2018.6 금융그룹 자본적성성 감독기준 초안)

< 금융그룹 **집중위험** 관리제도의 필요자본 가산기준(안) >

구 분	필요자본 가산기준
① 모범기준 시범운영 ('18.7월 ~)	※ 필요자본 가산 : 미적용
② 통합감독법 시행 ('19 ~ '20년)	<p>▶ 비은행금융지주사 규제방식 준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 업권별 규제한도 가중평균 (참고 1) •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 : 업권별 규제한도 가중평균 (참고 1) •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 출자액 비중에 따라 필요자본 차등 가산 (sliding scale 방식) (참고 2) <p>※ 필요자본 가산 : 한도초과분 × 100%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는 sliding scale 방식 적용)</p>
③ 금융법령 정비이후 ('20년 이후)	<p>▶ 금융권 집중위험 관리제도 정비(안) (참고 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주주 익스포져 : 금융그룹 자기자본의 25% 이하(참고 4) • 비금융계열사 출자한도 : 금융그룹 자기자본 대비 개별사 15%, 합산액 60% 이하 (참고 2) <p>※ 필요자본 가산 : 한도초과분 × 100%</p>

1. 비은행지주의 비금융회사 출자위험 가산 (sliding scale 방식)

< 비은행지주의 비금융회사 출자위험 반영방식 >

비은행지주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사 주식 출자금액 자기자본의 0 ~ 5%	필요자본 가산비율*
5 ~ 15%	8%
15 ~ 25%	12%
25 ~ 60%	25%
60% ~	32%
	100%

* 자기자본 대비 비금융사 출자액이 클수록 필요자본에 가산하는 금액이 누진 증가

전이위험에 대한 필요자본 가산

(2018.6 금융그룹 자본적성성 감독기준 초안)

◇ 전이위험의 정량평가가 어려운 만큼,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 결과를 대안지표(proxy)로, 필요한 완충자본(buffer)의 크기를 산출

< 그룹위험 관리역량 평가항목 (예시) >

구 분	평가부문별 주요 평가항목	
위험 관리 체계	대표회사 이사회의 권한·역할	대표이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권한확보 등 체계의 적정성
		대표회사 이사회의 그룹위험관리 운영의 적정성
	그룹위험 모니터링	그룹의 주요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의 적정성
		위기상황 대응체계의 적정성
	그룹위험 관리정책, 절차 및 한도	그룹위험 및 계열사 전이위험 관리정책 및 절차의 적정성
		그룹위험 한도 설정 및 운용의 적정성
위험관리 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전이 위험 관리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리	그룹내 내부거래 기준 및 운영의 적정성
		금융그룹의 위험집중 인식·평가·관리체계의 적정성
	소유·지배구조	소유·지배구조의 안정성·건전성·투명성
이해상충 방지		그룹의 잠재적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체계의 적정성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 (예시)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안} 총위험자산	0.5%	1%	1.5%	2%	2.5%
^{(2)안} 필요자본	5%	10%	15%	20%	25%

집중·전이 위험 → 그룹위험에 흡수

(2020.2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방안)

① 전이·집중위험 평가를 통합한 「그룹위험 평가기준」 운영

< 그룹위험 평가항목(예시) >

평가부문	평가항목	주요 평가지표
계열회사 위험	(1) 재무적 위험	계열회사의 재무적 위험, 특정 자산의 집중 정도 등
	(2) 비재무적 위험	계열회사의 운영·경영관리 등
계열사간 상호연계성	(1) 소유-지배구조	소유구조의 안정성·복잡성, 비금융계열사 지분 비중 등
	(2) 내부거래 건전성	내부거래 규모,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
	(3) 평판 연계성	동일 명칭·로고 등 브랜드 연계 정도 등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1) 내부통제체계	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기준 적절성 등
	(2) 위험관리체계	금융그룹 위험관리정책·기준 적절성 등

비금융회사 출자 10%, 내부통제/위험관리 20%

(2021.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

추가적인 위험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제11조 제3항 관련)

평가 부문	세부 평가부문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
계열 회사 위험 (30%)	재무적 위험	· 소속금융회사의 자본비율 · 소속비금융회사의 재무비율	20%
	비재무적 위험	· 금융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치벌,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치벌	5%
		· 신용등급의 변동	5%
상호 연계성 (50%)	소유 연계성	· 소속금융회사의 소속비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액 비중	10%
		· 소속비금융회사의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지분율	10%
	내부거래	· 소속금융회사의 내부거래 수익 비중	5%
		·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액 비중	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내부거래 수익 집중도	2.5%
	· 특정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집중도	2.5%	
	공동투자	· 소속금융회사의 공동투자 비중	5%
출자구조	· 소유·출자구조의 복잡성	5%	
인사교류	· 소속금융회사와 소속비금융회사간 임원 겸직 등 인사교류의 적정성	5%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20%)	내부통제정책 및 기준		5%
	내부통제체계 운영		5%
	위험관리정책 및 기준		5%
	위험관리체계 운영		5%

가산비율: 전이위험 25% → 그룹위험 20%

(2021.4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

< 종합평가등급에 따른 필요자본 가산비율 (예시)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안) 총위험자산	0.5%	1%	1.5%	2%	2.5%
(2안) 필요자본	5%	10%	15%	20%	25%

출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초안 (2018.6)

< 등급별 위험자산자본 규모(%)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소등급	+ 0 -	+ 0 -	+ 0 -	+ 0 -	+ 0 -
(그룹위험)	(거의 없음)	(조금 있음)	(부분적 존재)	(다소 높음)	(매우 높음)
가산비율(%)	0 0 0	1.0 2.0 3.5	5.0 7.0 8.0	10.0 12.0 14.0	16.0 18.0 20.0

출처: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안) (2020.4)